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43
----------	-------

발의연월일 : 2026. 4. 20.

발 의 자 : 윤한홍 · 박덕흠 · 김상훈
이종욱 · 권성동 · 강명구
박상웅 · 박수영 · 김도읍
엄태영 · 김대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와 달리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후적 보완규정조차 없어 사실상 특수임무유공자 발굴을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유족 등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유공자로서 기록 및 예우할 수 있도록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아닌 특수임무유공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④ (생략)</p>	<p><u>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u></p> <p>⑥ (현행 제4항과 같음)</p>
---------------	--